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233199 손해배상(의)

- 원 고
1. 송○○
 2. 송◇◇
 3. 송◎◎
 4. 송●●
 5. 송◆◆
 6. 송⊕⊕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1.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 론 종 결 2015. 10.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 학교법인 [] 학원은 원고 송○○에게 2,153,846원, 원고 송◇◇, 송◎◎, 송◎◎, 송◇◇, 송㉠㉠에게 각 869,2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 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송○○에게 32,894,04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615,3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송○○은 망 조○○(1940. ○.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주○○은 인천 ○○○로 ○○○ (○○동)에서 '○○○○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2. 7. 10.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 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 7. 13.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악화되는 통증으로 급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피고1 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다.

3) 또한 망인은 2012. 8. 4.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입원 도중 피고1 병원에서 2012. 8. 6.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 간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종양의 악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AFP(간암진단지표검사) 결과 그 수치는 3.04로 정상 범위 내였다. 피고1 병원은 2012. 8. 7.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이하 '이 사건 CT 검사'라 한다)를 하였고, 검사 결과 오른쪽 간혈관종으로 판정하였다.

4) 망인은 2012. 8. 21.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외래 방문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1 병원은 2012. 9. 14. 망인에게 '상병명'을 '간의 양성 신생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견'을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및 간 CT상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 발견되어 진료의료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해 주었다.

5) 이에 망인은 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012. 9. 17. 피고2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2 병원 판독의 김○○은 이 사건 CT 검사 영상을 재차 판독하여 2012. 9. 18.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2 병원에서 2012. 9. 20.경. 복부 간 MRI 검사(이하 '이 사건 MRI 검사'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2012. 9. 21. 판독의 김ⓂⓂ은 이 사건 CT 검사 영상과 비교했을 때 간의 S5 분절(오른쪽아래 소구역)상 존재하던 병변(lesion)은 크기가 증가하여 6.3×4.5cm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외 간실질(liver parenchyma) 전반에 걸쳐 복수의 병변들이 새로 생겼고, 기존의 병변들도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은 확인되나 T2강조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등 혈관종증(Hemangiomas)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혈관종증 의증(R/O Hemangiomas)으로 판독하였다.

6) 피고2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의 김◇◇는 2012. 9. 24. 망인에 대해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였고[진단명 : (Final) Hemangioma, liver],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 없다(None Order)고 판단하였으며, 피고2 병원이 작성한 진료회신서상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1 병원은 2012. 10. 15경 위와 같은 진료회신서를 교부받았다.

7) 망인은 2012. 10. 17. 좌측 후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1 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이후 요추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2012. 11. 6. 위 통증이 다소 완화

되어 퇴원했다.

8) 망인은 2012. 11. 10. 인천성민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되었으며, 2012. 11. 13.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였으나, 다음날인 2012. 11. 14. 사망하였다. 국립암센터 의사 윤○은 뼈전이, 간전이가 의심되나 조직검사는 하지 못하였으며, 간으로 전이된 암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혈관종이라고 오진한 과실로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사망하였는바, 피고 법인 역시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대해 보면, 피고 법인은 망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망인의 가족인 원고 송○○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의 상속 지분 비율(원고 송○○ : 3/13, 나머지 원고들 : 2/13)에 따라 상속되었으며, 망인의 치료와 장례를 위해 원고 송○○이 합계 15,970,960원을 지출하였는바,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송○○에게 32,894,040원(=위자료 상속분 6,923,080원+본인 위자료 10,000,000원+치료비 및 장례비 합계 15,970,9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615,384

원(망인 위자료 상속분 4,615,384원+본인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CT 및 MRI 검사 결과상 영상의학적으로 간혈관종에 합당한 소견이었으며, 망인에게 선행 만성 간질환 또는 과거 악성종양 병력이 없이 정상 간기능을 보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간암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2 병원으로서 간혈관종 의증의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간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을 내린 바는 없으므로,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이후 예후 등에 비추어 간암 의심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진단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임○○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① 이 사건 MRI 검사상 망인의 간에 나타난 결절들(병변)은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거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간혈관종의 고신호보다는 높지 않고,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며, 반면 간특이조영제를 사용한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에서는 망인이 호흡으로 인한 영상의 질 저하가 심하고 본질적으로 간특이조영제의 한계로 인해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에서 종괴의 특성화가 어려운바, 이 사건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별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 ② 나아가 피고2 병원의 경우 피고

1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CT 검사 영상을 재판독하고 이 사건 MRI 검사 영상과 비교하였는바, 이 사건 MRI 검사 영상상 결절이 매우 많이 보이며 이 사건 CT 검사 영상에서 보였던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검사 기기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한 달 사이로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악성 종괴의 경우 종괴가 한 달 사이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혈관종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인 점, ③ 결국 피고 법인의 이 사건 MRI 검사 결과에 대한 영상의학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특징이 없다는 점과 나아가 이 사건 CT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단기간 내에 결절이 급속히 커져 간혈관종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간혈관종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할 것인 점, (2) 또한 피고 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2 병원이 간혈관종 의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화기내과 담당의 김◆◆는 간혈관종으로 확진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처방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를 피고1 병원에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 소견으로 인해 피고1 병원 및 망인으로 하여금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적 관찰을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하였고, 망인의 간암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인과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암을 확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1) 그러나 한편, 원고들 주장 피고1 병원에서 2012. 7. 10.부터 2012. 8. 21.까지 지출한 치료비(=394,790원+394,790원+2,015,360원) 손해에 대해 보면, 위 치료비는 피고2 병원의 위 과실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위 과실과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하다.

(2) 나아가 피고1 병원에서 2012. 10. 17.부터 2012. 11. 6.까지 지출한 치료비 손해에 대해서도 보면, 아래 3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1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치료행위의 적정성을 배척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아래 (3)항에서 인정되는 망인의 당시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2 병원의 앞서 본 과실과 위 지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2012. 11. 13.부터 2012. 11. 14.까지의 국립암센터에서의 치료비 1,757,340원, 2012. 11. 14. 지출한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에 대한 장의행사비 3,600,000원, 2012. 11. 14.부터 2012. 11. 16.까지 신세계장례식장에 대한 장례비 6,700,000원 관련 각 손해 주장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한○○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위 감정의 역시 망인이 이전부터 암에 걸린 상태로 볼 수도 있으며 전이암이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점,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골반골 전이암이 진단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MRI 검사 직후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진단하였더라도 망인이 완치되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한바, 결국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전제한 이 부분 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그러나 피고2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해 망인의 간암에 대한 진단과 추적 검사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간암에 대한 치료 여부와 방법에 대한 선택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MRI 검사 영상만으로는 간혈관종과 간암을 판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 앞서 본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간암 진단에 나타난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2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던 의료진은 아니었던 점, 망인의 사망 시점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MRI 검사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는 5,000,000원, 원고 송○○에 대하여는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1) 원고 송○○ : 1,153,846원(=5,000,000원×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나머지 원고들 : 각 769,230원(=5,000,000원 ×2/13)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송○○에게 2,153,846원(=1,153,846원+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69,230원(=769,230원+1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는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4.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1)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만 할 뿐 전이성 골종양을 확인하기 위한 CT 및 MRI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결과 사망하였는바, 피고 주○○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결국 피고 주○○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1 병원이 망인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 망인의 전이성 골종양을 확진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한○○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같은 병원 감정인 임○○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1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및 이 사건 CT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CT 검사 결과만으로는 소견상 간혈관종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판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1 병원은 망인에게 나타난 간종양과 관련하여 인하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위 병변과 관련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상급병원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점, ④ 전이성 골종양 진단은 인천성민병원에서 2012. 11.경 골반골 CT 검사를 통해서야 이루어졌고, 망인의 주된 호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이성 골종양 발견을 위한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 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 또는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피고 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희수